화물배상책임보험

CHUBB

보험기간 동안에 발생한 화물의 손상, 멸실, 운송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관습법, 계약서, 국가 또는 국제협약 관련법규의 범위내에서 담보합니다.

주요 보상하는 손해

화물배상책임부문 담보(Goods-Legal Liability)

- 보험기간 동안에 발생한 운송지연, 화물에 대한 손해, 멸실, 손상에 기인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

* '화물'에는 운송인에 의해서 제공되지 아니한 포장, 운송용구, 팔레트, 컨테이너도 포함됩니다.

-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배상 청구의 해결이나 방어에 필요한 법률 비용을 포함하여 보상 가능한 손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또는 그 결과로 피보험자에 의해 발생한 필수적이고 납득할 만한 모든 추가 비용을 담보합니다.
- 해난 구조 또는 공동해손의 적하분담 책임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제3자 손해배상책임부문 담보(Third Party Liability)

- 화물의 복합운송에 부수하여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특약사항)

전문직업인 배상책임 부담보(Professional Indemnity)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간접손해 부담보(Consequential Losses are not covered)
- 계약상 가중책임 부담보(Contractual Liability Exclusion Clauses)
- 징벌적 손해부담보(Punitive Damage Exclusion)
- 보상한도액 내 비용담보 조항(Cost and Expenses included within the Limit of Liability)
- 테러위험면책(Excluding Terrorism)
- 명시되지 않은 종가 기존에 따른 추가 배상책임 부담보(Excluding Additional liability incurred under Ad-Valorem Clauses unless declared)

- 화주의 동의 없는 갑판적 화물 부담보
  (Freight loaded in bulk on deck is not covered unless freightowner consent)
-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 부담보
  (International Negligent Acts of insured is not covered)
- 서기 2000년 인식문제 부담보
  (Millennium Exclusion Clauses)
- 국제화물 복합운송주선계약인 경우만 담보-순수 국내운송 부담보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nly covered-Pure domestic transport not covered)
- Forwarder B/L 미발행미고지시, KIFFA, FIATA 또는 IATA B/L적용
  (KIFFA, FIATA or IATA B/L will be applied if any forwarder B/L not noticed to Insurer)
- 제재국가 인수금지 및 면책약관
  (Sanction Limitation and Exclusion Clauses)

가입대상

화물 운송업자 또는 운송주선업자 등

보상 한도 / 보험 기간

1~2억원 / 가입일로부터 1년

적용 지역

전세계

보험가입시 필요서류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손익계산서 사본 등

처브그룹 소개

처브그룹은 세계 보험업계를 선도하는 보험사입니다. 전세계 54개국에서 재물보험, 특종보험, 개인상해보험, 건강보험, 재보험 및 생명보험을 다양한 기업 및 개인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더라이팅 중심 기업인 처브그룹은 보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원칙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평가 및 관리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처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보험 전문지식과 장인정신으로 처브그룹은 개인, 가족, 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 다양한 고객층에게 최상의 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처브그룹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광범위한 판매 채널, 탁월한 재무 건전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자랑합니다. 처브그룹은 다국적 기업 및 중소기업 고객을 위한 재물보험, 특종 보험, 리스크 관리 서비스, 고액자산보유 고객을 위한 자산보호 목적의 보장성보험, 개인 고객을 위한 생명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주택종합보험 및 특화보험 그리고 단체상해 보험, 단체생명보험 및 재보험 상품을 제공합니다.

미화 2,465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미화 620억 달러의 총 수입 보험료를 달성한 처브그룹의 주요 보험 계열사들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사의 기업재무 능력 AA 등급을, AM Best의 A++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브그룹의 모기업인 처브리미티드(Chubb Limited)는 뉴욕증권거래소(NYSE: CB)에 상장되어 있으며, S&P 500 지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브그룹은 취리히, 뉴욕, 런던, 파리 및 기타 주요 도시에 사업본부가 있으며, 전 세계 약 45,000명 이상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Contact Us

라이나손해보험, 처브그룹 컴퍼니
03156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4, 15층
대표번호: +82 2 2127 2400
대표팩스: +82 2 6913 8498
www.chubb.com/kr

라이나손해보험은 처브그룹 컴퍼니인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의 브랜드명으로, 라이나생명과 독립된 계열회사입니다.

양준호 대리
Marine Underwriter
O +82 2 6711 5786
E Jun-Ho.Yang@Chubb.com

홍태민 사원
Marine Underwriter
O +82 2 6711 5741
E Tae-Min.Hong@Chubb.com

Chubb. Insured.℠

© 2026 처브그룹. Chubb®, 처브 로고그리고 Chubb. Insured.℠ 는 처브그룹의 등록상표입니다.

CHUBB®

알아두실 사항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와 의무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계약후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의 사항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시]
1.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2.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예: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등)

회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 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 소비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자는 청약 시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취소 신청주소: (0315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4, 15층 (전화: 02-2127-2400)
- 가까운 영업점 위치: (0315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4, 15층 (고객서비스센터) (전화: 02-2127-2400)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의 지급 및 지급제한

보험금의 지급
보험사는 지급보험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손해를 통지 받고 보상할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상황 하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저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책임이 확정되지 않거나 피보험자의 관리영역 내에 있는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은 보험금 지급을 중지합니다.

A. 보험자에게 필요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의 보상청구권에 의문이 있는 경우
B.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의 조사 또는 형법에 의한 심문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중인 경우

보험금의 지급제한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일반면책사항 (이 일반면책은 증권의 전 부문에 적용됩니다.),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적 행위나 고의적 태만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해제 · 해지에 관한 사항 (해지환급금 안내)

계약의 해지사항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3.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경우

계약의 해제사항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650조 제1항).

보험계약이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리나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이유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시 보험기간 중 남은 미경과기간에 대해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돌려드리므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 고객서비스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회사 전화번호: 1566-5800 (고객서비스센터)
  인터넷주소: www.chubb.com/kr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www.fss.or.kr/국번없이 1332)/
  우)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 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 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 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해 드리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Chubb. Insured.℠

© 2026 처브그룹. Chubb®, 처브 로고 그리고 Chubb. Insured.℠ 는 처브그룹의 등록상표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기타-2026-0002